

제6호

행정명령

기존 행정명령의 유지 및 만료

행정명령 제1호에 따라, 금일 현재 발효 중인 모든 행정명령과 그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였으므로,

그러한 검토 과정에서 일정 행정명령이 불필요하고, 시대에 맞지 않거나 유지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으므로,

또한 행정명령 가운데 일정 행정명령이 계속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서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으므로,

대중에게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행정명령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행정명령을 확인해 주는 것이 중요하므로,

그러므로 이제, 뉴욕주 주지사 KATHY HOCHUL 본인은 뉴욕주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권에 의하여, 이에 충분한 고려, 심의, 및 검토 후, 전임 주지사들이 발부한 모든 행정 명령 중, 아래에 명기한 행정 명령 및 그 개정안을 제외하고 전부 폐지, 취소, 철회할 것을 이에 명령하며, 아래에 명기한 행정 명령 및 개정안은 철회, 대체, 또는 개정될 때까지 계속하여 엄중히 효력을 발휘합니다.

I. Nelson A. Rockefeller 주지사 발부 명령 중 효력 유지 명령

- a. 행정명령 제42호, 발부일 1970년 10월 14일(주 직원의 특정 민원 사항의 제출 및 처리 절차 관련).

II. Mario M. Cuomo 주지사 발부 명령 중 효력 유지 명령

- a. 행정명령 제5호, 발부일 1983년 2월 16일(행정부 내각에 여성부 창설)
- b. 행정명령 제7호, 발부일 1983년 2월 18일(히스패닉 사안을 위한 주지사 산하 자문위원회(Governor's Advisory Committee for Hispanic Affairs) 창설)
- c. 행정명령 제8호, 발부일 1983년 2월 25일(주도급 계약 선정 시 주정부 기관이 노동 관련 관행을 고려하도록 지시)
- d. 행정명령 제11호, 발부일 1983년 4월 26일(증권조정위원회(Securities Coordinating Committee)의 회원자격 및 권한 확대)
- e. 행정명령 제12호, 발부일 1983년 5월 3일(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하여 뉴욕주 노령화 사무국(Office for the Aging)이 검토 및 의견을 내도록 지시)
- f. 행정명령 제17호, 발부일 1983년 5월 31일(차별을 하는 민간기관에 대한 주정부 지침 수립)
- g. 행정명령 제19호, 발부일 1983년 5월 31일(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뉴욕주 정책 성명서)
- h. 행정명령 제23호, 발부일 1983년 9월 1일(뉴욕주 옴부즈맨 사무소 창설)
- i. 행정명령 제26호, 발부일 1983년 10월 7일(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뉴욕주 장애인 옹호국(Office of Advocate for the Disabled)이 검토하도록 지시)

- j. 행정명령 제34호, 발부일 1984년 1월 13일(뉴욕주 인권 옹호위원회(Human Rights Advisory Council) 창설)
- k. 행정명령 제46호, 발부일 1984년 8월 28일(올버니 소재 주정부 청사를 W. Averell Harriman 주정부 청사로 명명)
- l. 행정명령 제56호, 발부일 1984년 12월 20일(생명 및 법에 관한 뉴욕주 전담반(Task Force on Life and the Law) 창설)
- m. 행정명령 제66호, 발부일 1985년 6월 5일(주지사 산하 흑인 사안을 위한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for Black Affairs) 창설)
- n. 행정명령 제77호, 발부일 1985년 10월 31일(마틴루터킹 주니어 커미션(Martin Luther King, Jr. Commission)의 회원제 정립)
- o. 행정명령 제80호, 발부일 1986년 3월 21일(청소년 사법제도 기획)
- p. 행정명령 제82호, 발부일 1986년 5월 2일(주지사 산하 히스패닉을 위한 사무소(Office for Hispanic Affairs) 창설)
- q. 행정명령 제95호, 발부일 1987년 4월 15일(재난대비위원회를 주 비상대응위원회(State Emergency Response Commission)으로 지정)
- r. 행정명령 제96호, 발부일 1987년 4월 27일(직장 내 연령 차별을 방지하는 뉴욕주 정책 추진)
- s. 행정명령 제97호, 발부일 1987년 4월 27일(주 고속도로 안전 프로그램을 조율 및 승인하기 위하여 주지사 산하 교통안전위원회(Traffic Safety Committee)를 주정부 기관으로 지정)
- t. 행정명령 제98호, 발부일 1987년 5월 13일(대학원 의학 교육에 관한 새로운 주위원회(State Council on Graduate Medical Education) 설립);
- u. 행정명령 제100호, 발부일 1987년 8월 31일(워터타운(Watertown) 주정부 청사를 덜레스(Dulles) 주정부 청사)로 명명)
- v. 행정명령 제111호, 발부일 1988년 8월 11일(편견 관련 범죄 사건들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조사하도록 지시)
- w. 행정명령 제114호, 발부일 1988년 12월 9일(포키프시(Poughkeepsie) 주정부 청사를 엘리노어 루즈벨트(Eleanor Roosevelt) 주정부 청사로 명명)
- x. 행정명령 제125호, 발부일 1989년 5월 22일(도급업체 위원회 창설)
- y. 행정명령 제131호, 발부일 1989년 12월 4일(행정심판 계획 수립)
- z. 행정명령 제147호, 발부일 1991년 7월 31일(대인도 관계 사무소(Office of Indian Relations) 창설)
- aa. 행정명령 제150호, 발부일 1991년 10월 9일(애디론덱 공원(Adirondack Park) 내 주정부 기관에 의한 신규 토지 사용 및 개발)
- bb. 행정명령 제158호, 발부일 1992년 6월 23일(뉴스콧랜드 애버뉴 연구소 선물을 David Axelrod 공중보건 연구소로 명명)
- cc. 행정명령 제169호, 발부일 1993년 3월 22일(델라웨어 강 상류 관리 계획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주정부 기관들에 지시)
- dd. 행정명령 제170.1호, 발부일 1993년 6월 23일(입찰자들의 책임 판단을 위한 표준 지침 수립)
- ee. 행정명령 제179호, 발부일 1993년 12월 30일(국가 및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뉴욕주 위원회 창설).

III. George E. Pataki 주지사 발부 명령 중 효력 유지 명령

- a. 행정명령 제26.1호, 발부일 2006년 9월 28일(국가 사건 관리 시스템을 비상 대응 관리 시스템(Management System for Emergency Response)으로 통합)
- b. 행정명령 제40호, 발부일 1996년 7월 26일(배출 감소 크레딧을 등록하도록 주정부 기관들에게 명령)
- c. 행정명령 제49호, 발부일 1997년 2월 12일(한 개 이상의 프로젝트 근로 계약 활용을, 배타적 권한으로, 고려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
- d. 행정명령 제51호, 발부일 1997년 5월 20일(뉴욕시 상수구역(New York City Watershed) 내 주정부 기관 활동)
- e. 행정명령 제57호, 발부일 1997년 10월 23일(뉴욕시 상수원 보호 및 제휴 위원회 창설)
- f. 행정명령 제83호, 발부일 1998년 7월 1일(재키 로빈슨 엠파이어 스테이트 프리덤 메달(Jackie Robinson Empire State Freedom Medal) 및 재키 로빈슨 엠파이어 스테이트 메달 위원회 제정)
- g. 행정명령 제86호, 발부일 1998년 8월 19일(뉴욕시 상수원 감찰관(Watershed Inspector General) 직위 제정)
- h. 행정명령 제116호, 발부일 2002년 1월 7일(주 가뭄관리 전담반 재구성)
- i. 행정명령 제117호, 발부일 2002년 1월 28일(뉴욕주 최고 정보 책임자(Chief Information Officer, CIO) 직위 제정);
- j. 행정명령 제125호, 발부일 2003년 3월 24일(미합중국 예비군 대원 및 뉴욕주 편제 주병군에게 적절한 보호 및 혜택이 제공되도록 주 공직자들에게 지시)

- k. 행정명령 제128호, 발부일 2003년 6월 16일(2001년 9월 11일 테러리스트 공격 후 맨하튼 남부(Lower Manhattan) 재개발과 연결하여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연방 보조금 수령을 위한 요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맨하튼 남부 개발 회사(Lower Manhattan Development Corporation) 지명)
- l. 행정명령 제142호, 발부일 2005년 11월 21일(주 차량 및 청사에서 유기연료 사용을 통하여 운송 연료 및 난방유 공급을 다양화 하도록 주정부 기관 및 당국에 지시).

IV. Eliot L. Spitzer 주지사 발부 명령 중 효력 유지 명령

- a. 행정명령 제3호, 발부일 2007년 1월 1일(정부 의사결정에 일반 대중 접근권 장려)
- b. 행정명령 제9호, 발부일 2007년 3월 5일(특정 범죄 위반자들이 일시 석방 프로그램 참여에서 배제시키도록 교정서비스부(Department of Correctional Services) 커미셔너에게 명령)
- c. 행정명령 제13호, 발부일 2007년 5월 18일(식품 정책에 대한 뉴욕주 위원회 창설)
- d. 행정명령 제17호, 발부일 2007년 9월 5일(근로자 분류오류에 관한 연합 시행 전담반 창설)
- e. 행정명령 제19호, 발부일 2007년 10월 22일(가정 폭력 및 직장 정책 채택 의무화)

V. David A. Paterson 주지사 발부 명령 중 효력 유지 명령

- a. 행정명령 제4호, 발부일 2008년 4월 25일(주정부 친환경 조달 및 기관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창설)
- b. 행정명령 제6호, 발부일 2008년 6월 4일(대인 서비스를 위한 도급 계약의 비용-효과성 보장하기)
- c. 행정명령 제7호, 발부일 2008년 6월 18일(주 재산 및 주지사에 대한 캠페인 기부금의 개인적 사용 금지)
- d. 행정명령 제16호, 발부일 2009년 4월 15일(뉴욕 주민을 위한 중독 문제 향상 협업에 관한 주 차원의 위원회(Addictions Collaborative to Improve Outcomes for New Yorkers, ACTION) 창설)
- e. 행정명령 제17호, 발부일 2009년 4월 27일(재산세 감면 추진을 위한 지방 정부에 대한 공문 비용을 평가하기 위한 방안 제정)
- f. 행정명령 제18호, 발부일 2009년 5월 5일(주 시설에서 병에 든 생수 사용 제한 및 행정 기관 지속 가능성 장려)
- g. 행정명령 제20호, 발부일 2009년 5월 29일(주 사법부 청사를 Robert Abrams 사법 정의관(Robert Abrams Building for Law and Justice)으로 명명)
- h. 행정명령 제24호, 발부일 2009년 8월 6일(205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 80퍼센트 감소를 위한 목표 수립 및 기후 행동 계획 준비)
- i. 행정명령 제31호, 발부일 2009년 11월 25일(경기 부양 감독단의 책임, 의무, 권한 정립)
- j. 행정명령 제32호, 발부일 2009년 12월 14일(2009 공공단체개혁법(Public Authorities Reform Act) 실행에 대한 주지사 산하 전담반 창설)
- k. 행정명령 제33호, 발부일 2009년 12월 16일(성적 정체성을 근거로 주 채용에서 차별을 금지)
- l. 행정명령 제35호, 발부일 2010년 2월 18일(행정명령 제142호의 제2절(Section II)을 무효화)
- m. 행정명령 제38호, 발부일 2010년 6월 8일(공공단체개혁법 실행에 관한 전담반 유지)
- n. 행정명령 제39호, 발부일 2010년 11월 4일(지속가능한 지역 농장의 촉진과 농지 보호를 위한 주 정책 수립)
- o. 행정명령 제41호, 발부일 2010년 12월 13일(마르셀루스 셰일(Marcellus Shale)에서 고용량 수압 파쇄에 대한 환경 평가 요건 강화)
- p. 행정명령 제42호, 발부일 2010년 12월 13일(행정부 내각 기록 관리 정책 수립)

VI. Andrew M. Cuomo 주지사 발부 명령 중 효력 유지 명령

- a. 행정명령 제1호, 발부일 2011년 1월 1일(주정부에 대한 장벽 제거)
- b. 행정명령 제3호, 발부일 2011년 1월 2일(윤리 교육)
- c. 행정명령 제10호, 발부일 2011년 3월 2일(대인 서비스 도급에 대한 비용 삭감)
- d. 행정명령 제11호, 발부일 2011년 3월 2일(미국 내국세법 제42절에 따른 주 저소득 주거 크레딧을 할당하기 위한 절차 규정)
- e. 행정명령 제15호, 발부일 2011년 4월 27일(사법심사위원회(Judicial Screening Committees) 창설)
- f. 행정명령 제26호, 발부일 2011년 10월 6일(주 전역의 언어 접근성 정책) 및 행정명령 제26.1호, 발부일 2021년 3월 23일(주 전역의 언어 접근성 정책)
- g. 행정명령 제88호, 발부일 2012년 12월 28일(주정부 기관 및 당국에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하도록 지시)
- h. 행정명령 제95호, 발부일 2013년 3월 11일(투명성을 촉진하고, 정부 성과를 향상하고, 시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테크놀로지 사용)

- i. 행정명령 제110호, 발부일 2013년 7월 17일(모호크밸리(Mohawk Valley) 및 2013 업스테이트 홍수 회복 프로그램(Upstate Flood Recovery Program) 창설)
- j. 행정명령 제130호, 발부일 2014년 3월 20일(재향군인, 군인, 군인 가족에 관한 뉴욕주 위원회 창설)
- k. 행정명령 제147호, 발부일 2015년 7월 8일(경찰관에 의해 유발된 민간인 사망과 관련한 사안을 조사 및 기소하기 위한 특별 검사), 제147.28호, 발부일 2019년 10월 4일, 제147.36호, 발부일 2020년 7월 15일, 제147.37호, 발부일 2020년 7월 15일, 제147.38호, 발부일 2020년 7월 15일, 제147.40호, 발부일 2020년 10월 7일, 제147.41호, 발부일 2021년 12월 28일, 제147.42호, 발부일 2021년 1월 4일
- l. 행정명령 제156호, 발부일 2016년 4월 5일(주 기금 또는 주 후원 미시시피 여행 금지)
- m. 행정명령 제157호, 발부일 2016년 6월 5일(이스라엘에 반대하는 BDS 캠페인 지원 공공 기금을 처분하도록 주정부 기관 및 당국에 지시)
- n. 행정명령 제159호, 발부일 2016년 7월 20일(근로자 착취 및 종업원 분류 오류와 싸우기 위한 영구 전담반 창설)
- o. 행정명령 제161호, 발부일 2017년 1월 9일(주 고용주에 의한 임금 공정성 보장)
- p. 행정명령 제162호, 발부일 2017년 1월 9일(주 계약자에 의한 보수 공정성 보장)
- q. 행정명령 제166호, 발부일 2017년 6월 1일(기후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경제 및 환경적 위험을 상대로 한 뉴욕의 싸움 강화 및 파리 기후협약 목표 재확인)
- r. 행정명령 제167호, 발부일 2017년 6월 9일 뉴욕의 공식 의료보험 거래소인 NY State of Health에서 철회하는 보험업체에 대한 금지)
- s. 행정명령 제169호, 발부일 2017년 6월 24일(유권자 등록에 관한 주 정책)
- t. 행정명령 제170호, 발부일 2017년 9월 15일(이민자가 주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에 관한 주 정책)
- u. 행정명령 제171호, 발부일 2017년 10월 16일(장기 기증 정책)
- v. 행정명령 제175호, 발부일 2018년 1월 24일(뉴욕 주민을 위한 인터넷 중립성 보장)
- w. 행정명령 제177호, 발부일 2018년 2월 22일(차별을 지지하는 기관과 주 계약 체결 금지)
- x. 행정명령 제180호, 발부일 2018년 4월 2일(브롱스, 킹즈, 뉴욕, 퀸즈, 리치몬드 카운티의 공공 주택 재난 선포)
- y. 행정명령 제183호, 발부일 2018년 6월 27일(공공 부문 근로자의 개인 정보 보호)
- z. 행정명령 제184호, 발부일 2018년 7월 9일(여성의 피임 접근권 보호)
- aa. 행정명령 제185호, 발부일 2018년 8월 13일(2023 유니버시아드(World University Games) 위원회 창설 및 경기에 대한 뉴욕주 지원 반영)
- bb. 행정명령 제187호, 발부일 2018년 8월 23일(직장에서 다양성과 포용성 보장 및 희롱과 차별 방지 보장)
- cc. 행정명령 제190호, 발부일 2018년 11월 14일(모든 정책에 있어서 건강을 주정부 기관 활동에 통합)
- dd. 행정명령 제192호, 발부일 2019년 1월 15일(주 계약에서 지속적인 공급업체 정직성 요건을 부과하는 행정 명령)
- ee. 행정명령 제196호, 발부일 2019년 9월 12일(모든 타바코 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 계획과 자료에서 전자담배 방지 포함 및 취학 아동을 위한 종합 교육 프로그램 도입)
- ff. 행정명령 제198호, 발부일 2019년 11월 20일(카유가, 제퍼슨, 몬로, 니아가라, 올리언즈, 오스위고, 세인트로렌스, 웨인 카운티 내 재난 선포) 및 행정명령 제198.19호까지 및 이를 포함하는 후속 명령
- gg. 행정명령 제201호, 발부일 2020년 2월 14일(뉴욕주립대학 플라자를 H. Carl McCall SUNY 관으로 명명)
- hh. 행정명령 제211호, 발부일 2021년 7월 6일(총기 사고로 인한 주 전역 재난 비상 사태 선포) 및 행정명령 제211.1호까지 및 이를 포함하는 후속 명령
- ii. 행정명령 제212호, 발부일 2021년 8월 19일(스투번 카운티 내 재난 선포)
- jj. 행정명령 제213호, 발부일 2021년 8월 21일(브롱스, 킹스, 나소, 뉴욕, 퀸즈, 리치몬드, 서퍽, 웨스트체스터, 퍼트넘, 로클랜드, 오렌지, 더치스, 설리번, 콜롬비아, 델라웨어, 그린, 브룸, 체난고, 옷세고, 렌셀러, 쇼하리, 올버니, 몽고메리, 스케넥터디, 사라토가 및 인접 카운티 내 재난 선포)

2021년 10월 8일 금일, 올버니 시에서 자필로 작성하여
뉴욕주 직인을 날인함

주지사

주지사 비서